

구미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2005. . .
제출자 구미시장

1. 개정이유

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변경됨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2년간 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 부담을 완화 하고자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2005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50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함.(안 제32조의2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경상북도 재정과-14971(2005. 8. 19) 시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

구미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구미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2조의2(재산세 과표경감)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5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적용시한) 제32조의2의 신설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 (안)	개정 이유
<신 설>	<u>제32조의2(재산세 과표경감) 2005</u> <u>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</u> <u>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</u> <u>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</u> <u>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</u> <u>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</u> <u>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</u> <u>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</u> <u>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.</u>	토지분 재산 세 부과시 2 년간 공시지 가 상승분 일 시 반영에 따 른 세부담 완 화를 위해 신 설.